

'86은 '88에 지통경

서 울 특 별 시

우자 01731-180 731-6146

'86. 8.

수신 수신처 참조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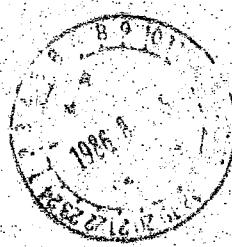
제목 항공화물 화주 보험제도 시행

1. 조달청 연업 01731-26651호 ('86. 8. 6)와 관련입니다.
2.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물자중 FOB Airport 조건으로 계약체결, 국적항공기편으로 수송하여 오는 모든 물자에 대하여 항공화물 화주 보험제도를 선택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관한 서면 요청을 승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할 것.

첨부: 1. 운행제도와 항공화물 화주보험 제도의 비교.

2. 항공화물 화주보험 서면 요청. 끝.

제 목	시립아동병원	수령인	결	금	증명
접수일자	1986. 6. 26	14PP	제	금	증명
처리과	운송과	355	증명	증명	



서 울 특 별 시 장

(부자관익당당관 전급)

수신처: 서국 1-67, 시사 1-56, 시보 1-17.

現行制度와 航空貨物貨主保險制度의 比較

區 分	現 行 付 保 制 度	航 空 貨 物 貨 主 保 險 制 度
保 险 會 社	社團法人 大韓損害保險協會	(株) 大韓航空
付 保 節 次	別途의 付保契約 繕緝	配船과 同時に 自動付保
保 险 料 支 扱	先 扱	後 扱 (航空運賃과 함께 後拂)
最 低 保 险 料	US\$ 7,-	US\$ 1,-
保 险 料 率	Air A/R 0.36%	Air A/R 0.18%
補 償 範 圍	T/S, I/T/E, Breakage (징밀기기류) 조건별도 부보요구	기본요율에 T/S, I/T/E Breakage 조건포함
事 後 精 算	必要時	省略罷
船 名 告 知 義 務	有 用	無 用
求 償 提 起	保險會社 및 運送會社에 各各 求償提起	運送會社兼 保險代理人인 KAL에 對하여서만 求償
保 险 有 效 期 間	揚荷後 10日間	揚荷後 30日間

航空貨物貨主保險處理要領

1986. 8.

調 達 廉

024

目 次

1. 目的	3
2. 適用範圍	3
3. 用語의 定義	3
4. 航空貨物 貨主保險 對象品目	3
5. 付保	3
6. 保險證券 並는 保險證明書發行의 省略	4
7. 搞保 危險	4
8. 始期와 終期	5
9. 保險金額의 計算	5
10. 保險料의 支拂	5
11. 保險料率	6
12. 最低 保險料	6
13. 保險料 事後精算의 省略	6
14. 事故發生時 指定事項	6
15. 事故 求償	7
16. 求償 金額	7
17. 對位權 請求	7
18. 施行	8

1. 目的

이 要領은 國籍航空社가 開發한 航空貨物 貨主保險制度를 當廳 導入外
資에 適用함으로써 國家 球算의 節約와 業務處理의 簡素化 및 行政能
率 向上에 寄與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適用範圍

航空貨物 貨主保險을 當廳이 FOB Airport 條件으로 契約締結하여 國
籍航空機便으로 輸送, 導入하는 모든 物資에 適用한다.

3. 用語의 定義

航空貨物 貨主保險 (Shipper's Interest Insurance)이라 함은 그
약款에 對하여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國籍航空社가 國際航空輸送聯
盟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公式刊行物을
通하여 公告한 保險商品의 一種을 말한다.

4. 航空貨物 貨主保險 對象品目

調整局長(現業課長)은 外資運送契約 業務規程 第 15 條 1 項에 依한 契約
締結 協議의 回報時に 航空貨物 貨主保險 對象品目 與否를 함께 通報
한다.

5. 付保

航空貨物 貨主保險으로 付保하고자 할 때에는 外資購買業務規程 第 33 條
(海上損害保險付保), 同 第 33 條의 1 (保險料 및 付保條件) 및 同 第
33 條의 2 (大韓損害保險協會에 對한 契約條件)의 適用을 排除하고, 契

約局長의 FOB Airport 契約締結通報에 따라 調整局長(現業課長)이 國籍航空社에 配船(輸送)指示할때 自動的으로 付保措置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 保險證券 또는 保險證明書 發行의 省略

航空貨物 貨主保險에서는 船積地에서 航空社 또는 그 代理店이 發行하는 Air Waybill 上의 保險關係欄 即 Amount of Insurance欄과 Due Carrier (Insurance Premium) 欄을 記載함으로써 保險의 効力を 發生하고 付保事實을 證明하게 되므로 別途로 保險證券 또는 保險證明書의 發行은 하지 않는것을 原則으로 한다.

7. 擔保 危險

航空貨物 貨主保險은 다음에 提示된 損害를 除外한 모든 外部的 要因에 起因한 損害를 擔保한다.

가. 遲延으로 因한 市場의 衰失이나 變質, 損傷 또는 質의 低下.

나. 戰爭損害(即 捕獲, 拿捕, 没收, 抑留 및 核武器에 依한 損害, 敵對行為 및 軍事的 行動의 結果 또는 內亂等) 및 同盟罷業, 叛變, 暴動으로 因한 損害.

다. 放射能 汚染으로 因한 直, 間接損害

라. 腐敗하기 쉬운 貨物이나 生動物에 對한 冷氣나 氣壓의 變動으로 因한 滅失, 損傷

但, 上記 “나”의 戰爭 및 同盟罷業等의 損害는 LONDON WAR, S.

R.C.C SCHEUDLE에 依한 追加保險料의 納付條件으로 擔保할수 있다.

8. 始期와 終期

가. 航空貨物 貨主保險은 船積地의 國籍航空社 또는 그 代理店에서 Air Waybill의 保險關係欄에 記載됨으로써 그 効力이 發生되며, 航空社나 그 代理店의 錯誤로 위의 記載가 漏落되었을 境遇에도 當廳의 付保指示가 確認된것에 對하여는 航空社가 保險事故를 擔保하여야 한다.

나. 終期는 正常的인 輸送經路와 換積을 包含하여 目的地港에서 揚荷한 後受荷主가 指定한 場所까지 内陸運送하는 全區間을 擔保하되, 目的地港 揚荷後 30日內 되는 日字와 上記 指定場所 實際引渡日字中에서 먼저 到來하는 日字를 終期로 한다.

9. 保險金額의 計算

保險金額(Amount of Insurance)은 送狀上의 FOB Airport 金額과 Air Waybill上의 航空運賃을 合한 C & F 金額에 憑想利益 10%를 加算한 金額으로 하되, 그 通貨單位는 送狀上에 表示되는 通貨單位와 同一하게 한다.

10. 保險料의 支拂

保險料(Insurance Premium)은 Air Waybill上의 Due Carrier欄에 表示하여야 하며, 이는 航空運賃과 함께 後拂로 한다.

11. 保險 料率

物資別 船積地域別 保險料率은 다음 表와 같다.

物 資 別	船 積 地 域 別	保 險 料 率
一般 貨 物	亞細亞, 澳洲, 北美, 歐羅巴	0.18%
貴重貨物	中・南美, 阿洲	0.25%

- 本 料率은 T/S, ITE 條件이 包含되어 있으며 Excluding Breakage 條件이 없음.

12. 最低 保險料

最低保險料는 每 Air Waybill 當 US \$ 1. 또는 그와 同額의 다른 通貨單位로 한다.

13. 保險料 事後 精算의 省略

航空貨物 貨主保險料는 航空運賃과 함께 後拂하는 條件으로서 外賣購買處務規程 第33條의 3(保險料의 精算)에 依한 保險料의 精算 및 還拂節次는 取하지 아니한다.

14. 事故發生時 措置事項

航空便 導入物資를 取扱하는 中央補給廠, 釜山支廳 및 需要機關은 保險事故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卽時 本船事故處理規程에 따라 國籍航空社에 求償權 留保通知를 하고 當廳 契約局長에 所定의 事故報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15. 事故 求償

契約局長은 다음의 書類를 具備하여 運帶없이 保險代理人인 國籍 航空社에 正式 求償을 提起하여야 한다.

- 保險求償狀 (Claim Letter)

損害의 明細 또는 損害額 計算書添付

- Invoice 및 Packing List 寫本

- Air Waybill 寫本

- Surveyor's Report 原本

- 修理費用 見積書 또는 領收證

- 求償權 留保通知書 寫本

- 其他 必要한 書類

16. 求償金額

가. 求償金額의 通貨單位는 原則的으로 Air Waybill 上의 Amount of Insurance 即 Invoice 와 同一한 通貨로 한다.

나. 國籍航空社가 查定한 求償金額을 當廳에 納入할 때에는 納入日의 韓國銀行 買賣基準率을 適用하여 現貨로 換算한 金額으로 한다.

17. 對位權 讓渡

航空貨物 貨主保險會社에서의 保險事故 負責者는 國籍航空社이며 保險代理人 役割을 兼하여 違行하므로 求償終了後 罷災貨物에 對한 對位權 讓渡節次는 取하지 아니한다.

18. 施 行

이 要領에 依한 航空貨物 貨主保險은 86.8.18. 由 購買契約 締結分半
터 適用한다.